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23162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 가운데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C' 소스코드를 역분석하여 무단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엔진", "기타 아래에 도식된 프로그램 저작물(일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에 관한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개작,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피고가 보관 중인 별지 2.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폐기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개작,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가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지도 엔진인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2)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간정보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공급해왔다.



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공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납품 경위

1) 원고는 2012.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단가 150만 원),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7개(단가 1,050만 원¹⁾)를 1,200만 원에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특별시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이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1개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2. 3. 30.경 165만 원(부가세 포함), 2012. 4. 3.경 1,155만 원(부가세 포함)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7개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1개만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프로그램²⁾과 같이 '서울시 T-GIS 현장업무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솔루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납품하였다.

4)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다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서버로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안드로이드 계정(ID),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Main Activity Class) 경로³⁾가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과 원고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말기에서 이 사건

1) 단가 150만 원 × 7개

2) 아래 3.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에서 각하되는 부분을 제외하였다.

3)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된 기능이나 모듈(Main Activity)을 호출하기 위한 클래스 경로를 의미한다.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거하였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F)와 이를 검사하는 코드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을 'G'에서 'H'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9, 10,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7개를 공급받아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1개만을 공급받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특별시에 7개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6개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에 관해서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고(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를 식별하기 위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함(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림현장조사시스템'에 관한 벤치마킹테스트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프리젠테이션을 해놓고서, 원고에게 '산림청에서



확인전화를 받으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피고의 제품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개작,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7개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1개만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기초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 7개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7개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라이선스들을 모두 제공하여 피고가 위 8개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채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에서, 정당한 대가



를 전부 지급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모두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납품한 것이 결국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역분석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지,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용허락의 범위를 초과함으로써 인한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닌 점(즉,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복제하여 납품한 행위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복제하리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원고와 피고가 이미 합의하였던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서울특별시에 납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원고는, 프로그램 관련 업계의 관행상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우에도 별도로 불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바로 그 프로그램을 복제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관행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프로그램의 창작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진 언어 체계에 따라 원시코드(예를 들어, C-언어, BASIC, FORTRAN 등을 말한다) 형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후 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진 언어 체계인 목적코드(0, 1의 이진법에 따라 작성된다) 형태로 어셈블링 또는 컴파일링하여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유통하게 된다. 역분석(Reverse Analysis)이란 위와 같은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링 또는 역컴파일링하여 원시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역분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인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는 것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 납품되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사용자 계정 등의 정보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것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것은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며, 또한 원고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접근하여 계정정보 등을 과다하게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34조, 제59조 등에 위배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무단 정보수집행위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것에 대하여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원고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은 호환성 확보라는 목적과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다는 보충성을 요하는데, 피고의 역분석 행위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관련 법 규정의 해석

저작권법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저작권법은 제2조 제34호에서 프로그램의 역분석 가운데 특히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역분석을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제101조의4 제1항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프로그램의 기초 원리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역분석이나 오류 수정이나 결함 제거를 위한 역분석 등과 같은 다른 용도의 역분석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용도의 역분석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② 또한 저작권법은 제101조의3 제1항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함 다음, 제101조의4 제1항에서 특히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③ 역분석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역분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복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그 복제가 저작권법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허용된다면 프로그램의 역분석 또한 허



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표현이지 그 기초 원리나 기술적 사상은 아니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초 원리나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특허권 등을 설정하여 별도로 보호받지 아니한 이상,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의해 그 기술적 사상에 접근하는 것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이고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은 역분석 가운데서 특히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역분석 행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될 경우에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게 된다.

(3)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프로그램의 기초 아이디어와 원리를 조사하기 위해 역분석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엔진 프로세스나 기술적 작동 원리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초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적법성이나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보안요구 정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역분석 행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면서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환성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다거나 호환성의 획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내장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상호협력하면서 수차례 기술지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으므로, 피



고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공정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원칙(Fair Use Doctrine)이란, 프로그램을 역분석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내재된 사상이나 기능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복제를 하는 자가 이러한 접근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의 역분석을 공정이용으로 보아 이를 허용한다는 이론으로서, 미국 판례법에 따라 발전한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역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각호와 같은 법 제101조의4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공정이용의 원칙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역분석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여 얻은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도 피고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가목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서버로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안드로이드 계정(ID),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Main Activity Class) 경로가 전송되



도록 하는 기능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말기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말기로부터 그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를 전송받아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한 다음,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아니한 단말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정해두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인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3호는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정보는 서울특별시에서 운



영하는 단말기의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이므로, 위 정보들이 '개인' 식별정보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보들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정보들만으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쿠키정보나 로그파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은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호환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호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위 정보들을 수집하는 코드를 제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고문구를 표시하거나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코드까지 제거하였는바, 이는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

4)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의 경우, 공무원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단말기의 등록은 공법인인 서울특별시의 명의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가 사용하게 될 단말기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부터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7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위 정보들을 수집하는 코드를 제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고문구를 표시하거나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코드까지도 모두 제거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9호 나목은 권리관리정보에 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정보 확인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F)와 이를 검사하는 코드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을 'G'에서 'H'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정보 확인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은 모두 원고의 상호인 'D'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영문명칭인 'I'를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를 식별하기 위한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권리관리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은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항공영상파일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데이터 파일에 기재된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삭제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이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항공영상파일 그대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은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항공영상파일을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영상의 크기를 줄이고 신속하게 로딩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은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항공영상파일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패키지명을 'J', 제품명을 'K'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패키지명을 'J', 제품명을 'K'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패키지명과 제품명을 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일 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패키지명을 변경하는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제5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프리젠테이션을 해놓고서도 원고에게 피고의 제품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고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 가운데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C' 소스코드를 역분석하여 무단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엔진", "기타 아래에 도시된 프로그램 저작물(일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에 관한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침해금지과 폐기청구를 구하면서 별지 1. 목록 제4항에서 그 대상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로 표현하고, 같은 항 2)호에서 "기타 'C' 소스코드를 역분석하여 무단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엔진"이라 표현하며, 같은 항 3)호에서 "기타 아래에 도시된 프로그램 저작물(일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이



라 표현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침해금지 및 폐기 대상인 피고 제품을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 가운데 위 각 기재 부분에 관한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여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 31.경 서초구청의 스마트 워크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입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이나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하여 앞으로 다른 곳에 납품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가 납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거나 납품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제작, 복제, 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 복제, 개작,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내장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200여개 이상을 납품함으로써 적어도 3억 원(= 라이선스 1개당 150만 원 × 200개)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인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3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또는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손해배상액인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으며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였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 8개(개발자용 1개, 최종사용자용 7개)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한 다음 이를 역분석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로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단말기나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충족해주기 위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역분석을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리를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다거나 그 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통하여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제품은 결국 당초 원고와 합의했던 7개 제품을 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200여개가 여러 곳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의 표현이지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



어는 아닌 점, ⑤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1개당 비용이 150만 원인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1개를 역분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며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100만 원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700만 원(= 라이선스 1개당 손해 100만 원 $\times$ 라이선스 7개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프로그램 가운데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C' 소스코드를 역분석하여 무단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엔진", "기타 아래에 도시된 프로그램 저작물(일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에 관한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5)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7개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중 6개에 관해서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고, 역분석 과정에서 1회의 복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저작권이 침해된 라이선스를 7개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2-05

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강동원

판사 박상한



별지 1.

프로그램의 표시

1. 명칭 : 원고의 프로그램(지도 엔진)을 포함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2. 제작자 : 주식회사 B

3. 제작시기 : 2012. 4.경

4. 원고의 프로그램('C')이 포함된 '서울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에 제공된 피고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써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C'

2) 기타 'C' 소스코드를 역분석하여 무단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 엔진.

3) 기타 아래에 도식된 프로그램 저작물(일부)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 저작물



('C'의 패키지 구조 삭제)

['C'의 패키지 구조]

('C'의 'onDraw' class 일부 삭제)

['C'의 'onDraw' class 일부]



692
694
695
697
699
700
703
707
709
710
713
717
718
720
722
723
724
725
727
728
730
731
733
734
736
737
739
740
742
743
746

('C'의 'onMeasure' class 일부 삭제)

1
['C'의 'onMeasure' class 일부]



별지 2.

프로그램의 표시

1. 명칭 : 원고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2. 제작자 : 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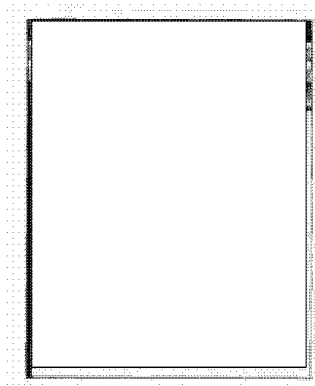
3. 제작시기 : 2012. 4.경

4.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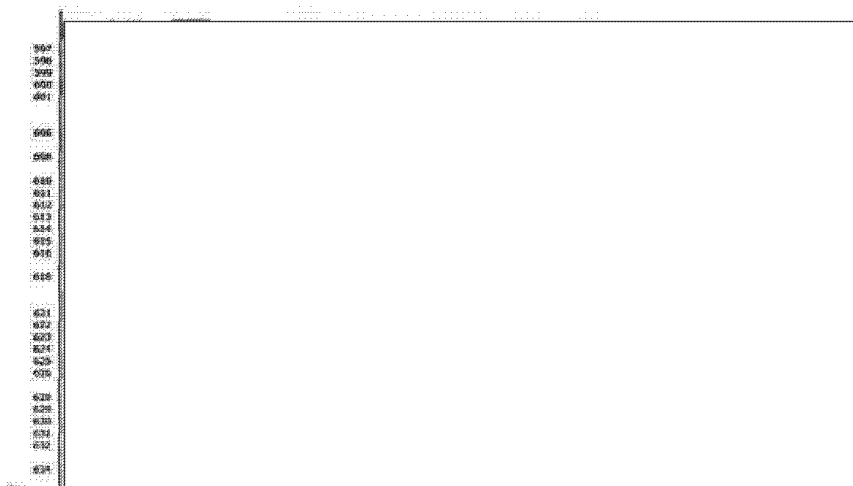
가. 원고의 'C' 프로그램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에 제공된 피고의 프로그램

나. 아래 코드를 포함한 피고의 프로그램

1) C의 패키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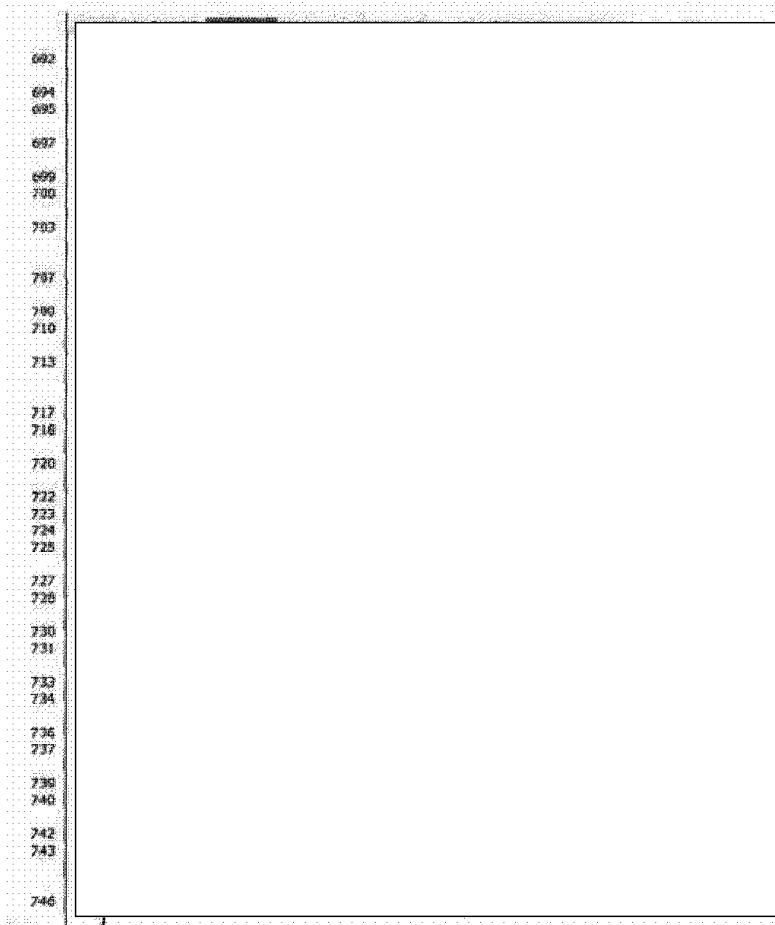
2) C의 'onDraw' class 일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2-05

3) C의 'onMeasure' class 일부



끝.